

김포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3401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4. 2. 23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2024년 2월 2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개편에 따른 콘텐츠 재구성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선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.
- 일반시민, 전문가 대상 김포마루 제작 참여 기회 확대를 콘텐츠 다양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시민명예기자 임기 변경(2년 → 1년) (안 제8조)
- 나. 시민명예기자 해촉 사유 변경(3월 → 2월) (안 제9조)
 - 정당한 사유 없이 2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 해촉
- 다. 전문가, 독자투고 등 소식지 제작 원고료 지원 근거 마련 (안 별표)
- 라. 그 밖에 용어, 띄어쓰기 등 정비

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김포마루 제작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민명예기자 임기 축소 및 해촉 사유를 변경하는 사안임.
- 타 시군의 조례* 비교 시 통상적으로 시민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이며, 해촉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로 명시되어 있어 특별한 개정 사유가 있는지 담당 부서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.

* 시민명예기자 위촉 및 해촉 규정 사례

조례명	조항
하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	제7조(명예기자) ③ 시민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	제8조(해촉) 시장은 시민명예기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 2.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
안산시 시정소식지· 인터넷신문 발행 조례	제10조(명예기자) ③ 일반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	제12조(위촉 해촉) ② 시장은 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. 2.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
시흥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	제14조제2항(위촉) ② 시민명예기자 등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	제15조(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명예기자 등을 해촉할 수 있다. 2.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
안성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	제11조(시민명예기자) ③ 명예기자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	제11조(시민명예기자) ④ 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 2.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

- 별표 시정소식지 원고료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작성 대상범위를 명예기자를 포함한 일반인 및 전문가로 확대하고 원고 종류에 따른 지급액을 인상하여 향후 시정소식지의 질적 향상과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